

이사회 규정

2005년 12월 01일 최초 제정
2016년 11월 30일 1차 개정
2017년 06월 01일 규정 승계
2022년 12월 21일 2차 개정
2023년 03월 29일 3차 개정

	입 안	검토 · 심의	결 정
결			
재	/	/	/

규정명	이사회규정	문서번호	IAMA-0005
		개정번호	3

제 1조 [목 적]

본 규정은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 이사회 (이하 “이사회”라 한다)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[적용범위]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조 [권 한]

- ① 이사회는 제 11조가 정하는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.

제 4조 [이사회내 위원회]

-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③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

제 5조 [구 성]

-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이사회의 구성원은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.
- ③ 이사회에는 총이사수의 4분의 1이상의 사외이사를 둔다.

제 6조 [의 장]

-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- ② 대표이사가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37조에서 정한 직무대행 순서에 따라 이사회의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7조 [종 류]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두 번째 금요일에 개최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8조 [소집권자]

-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 그러나 대표이사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6조 제 2항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대표이사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규정명	이사회규정	문서번호	IAMA-0005
		개정번호	3

③ 제 8조 1항에서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의안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9조 [소집절차]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(12시간)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제 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10조 [결의방법]

- ①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,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1조 [부의안건]

- ① 이사회 부의안건은 결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.
- ② 이사회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법령 및 정관상의 결의사항

- (1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, 공동대표의 결정
- (2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(3) 지점의 설치·이전·폐지
- (4)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, 폐지 및 위원의 선임·해임
- (5)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
- (6) 주주총회의 소집
- (7) 영업보고서의 승인
- (8) 재무제표의 사전 승인
- (9) 이사회 소집권자의 특정
- (10) 이사에 대한 겸업의 승인
- (11)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
- (12) 신주발행, 사채의 발행
- (13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14)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15) 신주인수권의 양도 결정
- (16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부여의 취소
- (17) 중간배당의 결정
- (18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
규정명	이사회규정	문서번호	IAMA-0005
		개정번호	3

- (19) 간이합병, 소규모 합병 및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 분할합병
- (20) 일반공모증자의 결정
- (21)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정
- (22)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의 설정
- (23)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
- (24) 교환사채의 발행
- (25) 대표이사 아닌 업무담당 이사의 선임 및 업무분장
- (26) 상담역 및 고문의 선임
- (27)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의 허용
- (28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- (29) 자기주식의 소각
- (30)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의사회 결의 사항 일체

2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언

가.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

- (1) 정관 변경
- (2)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
- (3)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
- (4)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등
- (5) 이사의 해임
- (6) 자본의 감소
- (7) 회사의 해산, 회사의 계속
- (8) 회사의 합병, 분할, 분할합병
- (9) 사후설립
- (10) 주식의 할인발행
- (11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(12) 삭제
- (13)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의 승인
- (14) 주식의 분할

나. 보통결의 사항

- (1) 이사의 선임
- (2) 이사의 보수의 결정
- (3) 재무제표의 승인
- (4) 이익배당 또는 주식배당의 결정

다. 특수결의

- (1) 삭제
- (2)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

3.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

규정명	이사회규정	문서번호	IAMA-0005
		개정번호	3

- (1)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의 설정
- (2)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- (3) 경영의 감독 및 경영성과의 평가
- (4) 경영진의 임면 및 보수의 배분
- (5)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
- (6) 대규모 자산의 차입
- (7) 회계 및 재무보고 체제의 감독
- (8) 법령 및 윤리규정 준수의 감독
- (9) 기업지배관행의 유효성 감독
- (10) 기업정보공시 및 내부통제의 감독
- (11) 중요한 사규, 사칙의 제정 및 개폐
- (12) 노조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
- (13)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- (14)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제기
- (15) 중요한 계약의 체결 및 취소, 해제·해지
- (16) 중요한 자산의 담보제공
- (17)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경영성과 및 경영에 관한 주요 집행상황
2. 위원회가 위임을 받아 처리한 사항
3.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를 요구한 사항
4. 기타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

제 12조 [관계인의 출석]
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3조 [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]

- ① 이사회는 이사의 청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 관련 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 1항에 의하여 감독권을 행사한 이사회는 그 결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14조 [의사록]

- ①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규정명	이사회규정	문서번호	IAMA-0005
		개정번호	3

제 15조 [간 사]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인사Part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6조 [전문가의 조력]

사외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금융, 회계, 법률, 기타 분야의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
<부 칙>

1. 본 규정은 2005년 12월 0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본 규정은 2017년 06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4. 본 규정은 2022년 1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5. 본 규정은 2023년 0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